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559

제안년월일 : 2021년 8월 31일
제 안 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승인된 공공성 확보 계획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고 심의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사전 자료수집 및 자문 등 별도의 작업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개인(個人)뿐만이 아닌 단체가 될 수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.

2. 주요 골자

○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함(안 제6조제1항)

○ 내용 중 '자'가 개인뿐만 아닌 단체를 의미할 경우 현행대로 함(안 제16조)

3. 참고사항 : 생 략

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1항 중 “제5조에 따라”를 “제5조제4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안 제16조 중 ‘사람에게’를 ‘자에게’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) ① 시장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5조에서 승인받은 공공성 확보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세부시행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	**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)** ① ------ 사업시행자가 제5조에 따라 승인된 ----------.	**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)** ① ------ 사업시행자가 제5조제4항에 따라 승인된 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② (개정안과 같음)
③ 사업시행자는 제5조제4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과 연도별 세부실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되,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	③ ---------- 제5조제4항---------- ---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연도별 ----------.	③ (개정안과 같음)
제16조(수당지급)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자, 회의에 필요한 사전 자료수집·회의안건 검토, 심의·자문 등 별도의 작업이나 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**제16조(수당지급)** -------- ---------- 사람, ---------- 사람에게 ---- 범위에서 ----------.	**제16조(수당지급)** -------- ---------- 사람, ---------- 자에게 ----- 범위에서 ----------.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운영과 관련하여”를 “운영에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사업시행자로 하여금”을 “사업시행자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항에 대하여”를 “사항을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”를 “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운영시”를 “운영 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사업시행자로 하여금”을 “사업시행자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4항에서”를 “제4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5조에서 승인받은”을 “사업시행자가 제5조제4항에 따라 승인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5조제4항 및 이 조 제2항”을 “제5조제4항”으로, “연도별”을 “제2항에 따라 승인된 연도별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그에 관한 완료내역”을 “완료내역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사업시행자에 대하여”를 “사업시행자에게”로, “사항에 의하여”를 “사항에 대하여”로, “에 대하여”를 “을”로, “하여야”를 “취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”를 “제2항에 따라”로, “승인”을 “확인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호 및 제2호 중 “대한”을 각각 “관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확보계획의”를 “확보계획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를”을 “사람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시의원”을 “서울특별시의회의원”으로, “민간단체 · 법인 · 기업 · 학계”를 “민간단체 · 법인 · 기업 · 학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차례에 한정하여”를 “차례만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척하여야 한다”를 “제척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수행중”을 “수행 중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3호 중 “부적당하다고”를 “적당하지 않다고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자,”를 “사람,”으로,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7조 중 “시행완료시까지를 운영기한으로”를 “시행완료 시까지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세빛섬 사업의 시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적용한다.	**제3조(적용범위)** ---------- ------- 운영에 ----------.
제4조(운영 정상화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 모든 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세빛섬 운영 정상화를 위한 2013년 9월 12일자 합의서(이하 ″합의서″라 한다)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시행자의 협약서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.	**제4조(운영 정상화)** ① ---------- ---------- 사업시행자가 ---------- ----------. ②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사항을 -- ---------- ----------.
제5조(공공성 확보계획 수립) ① 시장은 합의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추가 확보를 위한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(이하 “공공성 확보계획”라 한다)을 제출받아야 하며, 공공성 확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. 1. (생 략) 2. 세빛섬 운영시 사회적 약자 지원에 관한 사항 3. (생 략) ② (생 략) ③ 시장은 합의서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을 개시하기로 한 날로부터 2개월 전까	**제5조(공공성 확보계획 수립)** ① 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- 운영 시 -----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 ----------

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공공성 확보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	-- 사업시행자가 -----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서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을 전부 이행하는 경우, 시장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체상금 청구를 철회한다.	⑤ ---------- 제4항에 따라 ----------.
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) ① 시장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5조에서 승인받은 공공성 확보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세부시행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	**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)** ① ------ 사업시행자가 제5조제4항에 따라 승인된 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사업시행자는 제5조제4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과 연도별 세부실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되,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	③ ---------- 제5조제4항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연도별 ----------.
제7조(시행완료내역 정산) 사업시행자는 제6조에 따라 시로부터 승인받은 연도별 세부실행 계획을 시행하고, 매년 그에 관한 완료내역을 다음 연도 세부시행계획 심의 시에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의 정산을 받아야 한다.	제7조(시행완료내역 정산) ---------- 완료내역 ----------.

제8조(지체상금) ① (생 략)	제8조(지체상금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이행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공성 확보계획에 따라 이미 이행된 사항에 의하여 정산된 금액을 공제하고 이미 부과한 지체상금의 남은 잔액(매년 물가상승률 포함)에 대하여 다시 청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 사업시행자에게 ---------- 사항에 대하여 ---------- 을 ---------- 취하여야 ----.
③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시행완료내역 정산 후 7일 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위 정산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지체상금 잔액을 승인하는 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.	③ ---------- 제2항에 따라 ---------- 확인---------- .
제11조(위원회 설치) 시장은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세빛섬 사업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 1. 공공성 확보계획 및 변경계획에 대한 사항 2. 공공성 확보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 실행 계획 및 변경계획에 대한 사항 3. (생 략) 4. 공공성 확보계획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. (생 략)	제11조(위원회 설치) ---------- . 1. ---------- 관한 ---- 2. ---------- 관한 ----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--- 확보계획 ---------- 5.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위원회 구성) ① ~ ② (생 략)	제12조(위원회 구성) ① ~ ② (현행과 같

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	음) ③ ---------- 사람을 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위촉위원 : 시의원 1명, 변호사 1명 및 공인회계사 1명, 공공성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, 비영리 민간단체·법인· 기업· 학계 등에서 공공성관련 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명	2. -------- 서울특별시의회의원 ---------- ---------- 민간단체·법인·기업·학계 ---------- ----------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	⑤ ---------- ---------- 차례만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
제14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.	제14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---- ---------- ---------- 제척된다.
1.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용역·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에 있는 경우	1. ---------- ---------- 수행 중--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③ (생 략)	② ~ ③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위원 위촉 해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.	제15조(위원 위촉 해제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이유 없이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	3. ---------- -- 적당하지 않다고 ----------
제16조(수당지급)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자, 회의에 필요한 사전 자료수집·회의안건 검토, 심의·자문 등 별도의 작업이나 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**제16조(수당지급)** ---------- ------ 사람, ---------- -- 범위----------.
제17조(위원회 존속기한) 위원회 존속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 시행완료시까지를 운영기한으로 한다.	**제17조(위원회 존속기한)** ---------- ---------- 시행완료 시까지로 ----.